

##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

제 정 : 2021. 8. 20.  
개 정 : 2022. 12. 27.  
개 정 : 2025. 8. 1.

**제1조(목적)** ① 이 지침은 학사내규 제8조(입학전형관리위원회·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)에 근거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금강대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입학 제도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를 점검하고,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대학 입학제도 및 전형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기획관리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8. 1.>

②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
2.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에 관한 통제에 대한 사항
3.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
4.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·중간·사후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
5. 기타 대학입학 전형 업무 및 운영의 점검 및 개선안 보고

**제5조(회의)** 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사무관장)**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사무는 기획관리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8. 1.>

**제7조(기타)**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하고,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